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8. .
발 의 자 : 권중현 의원외2인

1. 개정이유
 ◦ 2005. 8. 5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6의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수당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 ◦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1일 7만원을 1일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려는 것임(안 제5조)

3. 세부내용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자료
 ◦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(별표6)
 ◦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

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"를 "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5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중 "7만원"을 "1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명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	제명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제5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한다.	제5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----------10만원----------.